

2. 환경신기술 평가제도 도입 예정

환경 신기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'환경신기술 평가제도' 도입 예정

○ 환경부는 국내에서 자체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수입된 환경신기술의 경제성, 타당성 및 실용성 여부를 국가가 평가·검증후 공인해주는 환경신기술 평가제를 도입하기로 발표

- 국내 자체개발 또는 외국도입 환경신기술에 대한 기술의 타당성, 경제성 및 실용성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술에 대해 국가가 우수기술로 공인함

환경신기술이 국내에 신속히 보급되기 위하여 캐나다, 일본 등 외국의 경우와 같이 국가차원에서 이를 평가하여 인정하고자 함

○ 환경신기술 평가제의 도입으로 우수 환경신기술이 신속하게 국내에 보급될 것으로 예상

- 현재 환경신기술의 주 수요처인 지자체가 기술적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부족과 신기술을 도입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시 특혜시비 및 실패, 사후고장 등 책임문제로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의 채택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
- 외국에서 개발한 최우수 환경기술 일지라도 하수,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술등은 외국과 국내의 처리물질 성상이 크게 달라 외국 기술을 그대로 도입·적용시 실패 확률이 높아 적용을 위한 현장 평가가 꼭 필요한 상황

환경관리공단을 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10월부터 공공수요 기술을 대상으로 평가할 예정

○ 환경부는 9월중으로 환경관리공단을 환경신기술 평가기관으로 지정하고 신기술평가센타를 설치 운영해 10월부터 본격적인 평가작업에 들어갈 방침

- '97년 하반기에 환경관리공단을 평가기관으로 지정 『환경신기술 평가센타』를 설치·운영키로 함
- 평가대상은 폐·하수 고도처리기술, 폐기물 소각 처리기술, 난분해성폐수 처리기술, 침출수 처리기술, 분뇨 처리기술 등 공공수요 5개 분야 기술을 대상으로 평가함

- '98년 이후에는 공공기술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술, 배연탈질 기술등 민간수요 기술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며 평가기관을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확대·특화 시켜 나아갈 계획

환경신기술에 대한 평가는 평가요원의 평가 후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를 토대로 환경부장관이 결과를 공개할 예정

- 환경신기술 평가시 기술개발자가 설치한 장소에 평가요원이 현장에서 기술을 평가하게 됨
 - 환경신기술 플랜트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평가센터의 요원이 현지 출장하여 기술의 타당성, 처리효율 및 성능의 우수성, 시설 및 장비의 내구성 등을 집중평가
 - 평가내용을 산업체, 대학, 전문연구소 등의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종합평가 후 환경부장관이 평가내용 및 결과를 공개

환경신기술의 최대한 활용촉진을 위하여 정부는 많은 지원을 할 예정

- 환경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인정서 발급, 법적 근거 마련 및 경제적 보조 등 지원
 - 우수 환경신기술로 인정된 기술에 대해서는 환경신기술 인정서를 발급하게 되고 환경기초시설등 공공분야에 우선 사용을 권고하게 되고, 관급공사 시공실적 인정 및 공사 참가자격 사전적격심사(PQ)시 가점부여등의 혜택을 받게 됨
 -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, 평가결과 우수신기술을 지자체 등에서 설치시 국고보조금 또는 양여금 지원을 받으며, 민자유치 대상사업 시설로 선정하는 등 최대한 지원할 계획

고 석 규(미래환경산업연구팀 주임연구원)